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51 - 11592호

시행일자 2022. 12. 26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 개정 알림(환경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환경부 폐자원관리과-4576(2022.12.22.)

3.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직후 「**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**」을 시행하여 타 감염병 폐기물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.

4. 코로나19 장기화,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(1급→2급, '22.4) 및 코로나19 격리의료 폐기물 배출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, **‘23.1.1일부터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기준을 「폐기물관리법」 상 격리의료폐기물 기준으로 복귀함**을 다음과 같이 우리협회로 알려진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	[현행]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6판)	[변경] 「폐기물관리법」 상*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
배출	○ 모두 냉장보관 원칙 ○ <b>당일 배출</b>	○ 성질·상태가 조식물류인 경우 냉장보관 ○ <b>보관 가능(7일 이내)</b>
수집·운반	○ <b>당일 운반</b> , 임시보관 금지	○ <b>임시보관 가능(2일 이내)</b>
처리	○ <b>당일 소각처리</b>	○ <b>보관·처리(2일 이내)</b>

\* 발생량 모니터링을 위해 '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' 전자태그 부착은 유지  
처리기준 변경으로 **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비용 지원 종료**

5. 아울러, 처리기준 변경 시행 이후로도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**합성수지 전용용기에 밀봉·소독하여** 배출하고, **보관시설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**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붙임 : 1. 환경부 공문 1부.  
2.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(제7판)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.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의를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